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37
----------	-----

2018년 12월 17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8년 9월 10일, 이광성 의원 외 19명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1일

다. 상정일자 : 제28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7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18년 12월 17일 상정·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이광성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 제25조제2항에서 신·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된 재정 등의 지원은 시민·사업자·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 다양한 계층으로 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6조에서는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를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와 통일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, 잘못된 조례 및 규칙의 제명을 정확하게 함.

나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를 현행의 사업자 외에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·운영하는 시민·시민단체·연구기관을 추가함(안 제6조제1항제3호)
- 잘못된 조례 및 규칙의 제명을 정확히 함(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

- 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

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

다. 기 타 :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(수석전문위원 : 김 선 희)

가. 개요

- 본 조례안은 신·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된 재정 등의 지원 대상을 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 제25조제2항에서 규정한 대상과 동일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, 잘못 표기된 다른 조례 및 규칙의 제명을 정확하게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현행 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 제25조제2항에서는 “에너지 절약과 신·재생 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·사업자·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·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·기술의 제공이나 설치·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·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음.
- 반면, 동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기후변화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을 신·재생에너지 자원조사·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, 연구 개발 및 기술평가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, 즉 사업자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만, 실제 사업자 외에 시민들에게도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음.

제6조(제6조(용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) ①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2. (생략)

3. 제5조제3호의 사업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

가. 신·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·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

나. 신·재생에너지의 연구·개발 및 기술평가

다. 신·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
- 라. 신·재생에너지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·홍보
- 마. 신·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
- 바. 신·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지원
- 사. 신·재생에너지관련 국제협력
- 아. 신·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
- 자.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학술활동 지원

○ 따라서 안 제6조제1항제3호와 같이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·운영하는 시민·시민단체·연구기관을 지원(용자 또는 보조) 대상에 포함하여 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신·재생에너지 보급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.

(현 행)	(개 정)
3. 제5조제3호의 사업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	3. 제5조제3호의 사업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. <u>다만, 마목의 경우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·운영하는 시민·시민단체·연구기관을 포함한다.</u>

다만, 동 조례안과 별개로 기후변화기금 용자성 사업이 신청 수요 감소로 인해 축소되고 있는 바, 기금 운용의 취지에 맞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임.

○ 그리고 동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 및 규칙의 제명에 오타 및 띄어쓰기가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(현 행)	(개 정)
서울특별시 <u>재정운용</u> 조례	서울특별시 <u>재정운영</u> 조례
서울특별시 <u>재무회계</u> 규칙	서울특별시 <u>재무회계</u> 규칙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자”를 “자.”로 하고,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마목의 경우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·운영하는 시민·시민단체·연구기관을 포함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 재정운용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”을 “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용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)</p> <p>①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제5조제3호의 사업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</p> <p>가. ~ 자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15조(준용규정) ①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재정운용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p> <p>② 기금의 회계관리는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	<p>제6조(용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자. 다만, 마목의 경우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·운영하는 시민·시민단체·연구기관을 포함한다.</u></p> <p>가. ~ 자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준용규정) ① ----- ----- <u>「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」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」 -----.</p>